

<제 4 호>

2020 년 4 월 3 일

<Paycheck Protection Program (PPP)>

CARES Act 하에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인 Paycheck Protection Program (PPP) 에 대해 나눕니다.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(EIDL) 과 유사한 SBA 지원 프로그램이지만, 상호 다르므로 두 프로그램의 내용을 잘 알고 하나 또는 두개를 신청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SBA 가 추진하고 연방재무부가 지원하는 PPP 는 코로나로 인해 2/15/2020 - 06/30/2020 사이에 영향을 받은 임금, 렌트비, 유틸리티, 비즈니스용자의 이자 등을 커버하는 SBA 구제 지원금/용자 프로그램으로 직원유지 및 재고용을 그 주목적으로 합니다. (\$349 BILLION 책정)

1. 지원 대상

500 이하 비즈니스, 자영업자, Independent Contractor, 요식업, 501(c)(3) 비영리단체 (교회 등) 등 가능

02/15/2020 날자로 영업하고 있었어야 되며, 직원의 임금지급 및 PAYROLL 세금부과한 신청자라야 함 (은행이 확인할 사항임)

2. 지원금 신청, 수속 기관 및 대리인

용자신청 및 승인은 SBA 승인된 시중/비시중 은행에서 용자신청 접수(은행 달라도 프로그램은 모든 신청인에 동일)

접수시작 일자:

4/3 - SMALL BUSINESS & SOLE PROPRIETORSHIP / 4/10 - INDEPENDENT CONTRACTOR SELF-EMPLOYED INDIVIDUAL (지원금제한으로 빠른 신청 요함)

취급 은행의 정부 보상: 따라서 은행은 신청인에게 수수료 청구 못함
\$350,000 & UNDER: 5% / \$350,000 TO 1 MIL: 3% / \$2 MIL ABOVE: 1%

신청대리가능자: 변호사, 회계사, 컨설턴트, 론부로커, 신청인의 유급 직원, SBA 와 거래하는 개인 또는 회사

대리인 보상: 은행이 받은 위 정부보상금에서 대리인에게 지급 (대리인은 신청인에게 청구 금지)

\$350,000 & UNDER: 1% / \$350,000 TO 2 MIL: 0.5% / \$2 MIL ABOVE: 0.25%

3. 용자 내용

임금, 렌트비, 유틸리티, 비즈니스용자의 이자 등 코로나로 인한 8 주간의 필수 비즈니스 비용을 지원하고, 조건충족시 이 지원금 전체를 FORGIVE 하고, 그렇지 못할 경우는 1% 용자금 이 되어 2 년안에 상환하는 프로그램.

지원금 FORGIVE 를 위해서는 직원해고를 하지 않고 유지하거나, 재고용해 그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만 해당

용자지원 가능 기간: 02/15/2020 - 06/30/2020

최대 10 Million (임금지불 의 크기에 금액 결정)

다른 SBA 용자나 지원금과 **항목**이 겹친 경우는 **그 항목에 대해서는** PPP 용자 안됨(항목이 다를 경우 다른 용자/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)

NO 조기상환수수료, NO FEES (시중은행에서도 FEE 청구 금지됨), NO 개인보증, NO 담보제공

FORGIVE 되지 않는 지원금은 1% 이자, 6 개월간 이자/원금지불유예 (최대 12 개월), 2 년만기상환

4. PPP 의 "상환의무없는 융자금 - LOAN FORGIVENESS FOR PPP"

1. FORGIVE 조건:

1. 지원금이 *임금(PAYROLL COSTS including benefits), 2/15/2020 전에 발생한 모기지 이자, 2/15/2020 전에 계약한 리스의 렌트비 & 2/15/2020 전에 서비스 시작한 유틸리티 비용에 사용되어야 하고

2. 직원의 수 및 임금 수준 유지해야 함(일부 직원해고시 그 FORGIVE 금액이 줄어들고, 2/15 - 4/26 사이에 직원 재고용 및 임금수을 6/30/2020 까지 해애크함)

단, 지원금의 75% 이상을 "PAYROLL COSTS" 에 사용되어야 함 (직원 개인당 \$100,000 이상되는 임금금액은 이 75% 산정시 넣을 수 없음)

위 조건 성취시 융자후 최초 8 주간 지출한 위 필수적인 비즈니스관련 비용은 모두 FORGIVABLE 됨. 12/31/2020 까지 FORGIVE 되지 않고 남은 융자금은 최장 2년 1%이자로 융자됨 (100% SBA 보증)

* PAYROLL COSTS 에 해당되는 항목:

- 회사: Salary, wages, commissions, tip, cost for vacation, parental/family/medical/sick leave, allowance for separation/dismissal, payment under group health care benefit (insurance premium, payment for retirement benefit, state/local tax on assessed compensation.

- Sole Proprietorship/I.C.인 경우: wage, commission, income, net earnings from self-employment

2. 지원금/융자금 한도:

4/5

신청시 받을 수 있는 지원/용자금액은 규모는 지난 해 월평균 PAYROLL COSTS 의 250% (=지난 해 평균 *MONTHLY PAYROLL COSTS 의 2 개월분 + 지난 해 평균 *MONTHLY PAYROLL COSTS 의 2 개월분의 25%)

단, 용자금보다 FORGIVE 되는 금액이 많을수 없고, 최대 10 MILLION 한도

3. **상환의무없는 용자금 증빙서류:** 임금지불증명 세금보고서류(PAYROLL DOCUMENTS), 리스, 이자 및 유틸 지불 증명서 등.

FORGIVE 는 반드시 신청자가 은행에 요청을 해야하고, 은행은 반드시 60 일내에 FORGIVE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함. FORGIVE 가 안되면 일반 용자금으로 됨

신규 지원/용자 신청 절차

작성된 신청서를 증빙서류(PAYROLL DOCUMENTS)와 함께 6/30/ 2020 까지 취급은행으로 제출. 지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요구됨

다른 용자/지원금 알아봐야 할 의무없이 바로 신청가능

반드시 정확한 정보/서류를 제출해야 하고, 거짓정보나 거짓서류를 제출하면 않됨 (형사고소 가능)

신청서 SBA Form 2483 (아래 링크참조)

<https://home.treasury.gov/system/files/136/Paycheck-Protection-Program-Application-3-30-2020-v3.pdf>

“ALONE, BUT TOGETHER”

<뉴욕교협 목회자들을 위한 Paycheck Protection Program (PPP) 화상 세미나 안내>

5/5

주제: 교회의 Paycheck Protection Program (PPP) 신청 및 교회에 도움이 되는 4 가지 경기 부양 프로그램

일시: 4 월 6 일(월) 저녁 9 시~10 시 30 분

세미나 매체: Zoom (Zoom 아이디와 암호는 추후 공지)

신청마감: 4 월 6 일(월) 정오 12 시

신청: 교협사무실(718.279.1414 / nyckch@gmail.com)

문의 : 서기 문정웅목사 (917.972.0210)

문의 : 조원태 목사 (뉴욕 이민자보호교회 위원장) (718.3096980)

주최: 이민자보호교회, 시민참여센터

주관: 뉴욕 교협